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참 고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2020.12.1(화) 00시(자정)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11. 30.(월)	담당부서	통상분쟁대응과 산업피해조사과
담당과장	정하늘 과장(044-203-4880) 한상덕 과장(044-203-5860)	담 당 자	이정효 사무관(044-203-4866) 김준철 사무관(044-203-5865)

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 패널은 일측의 핵심 제소사항을 기각하였으나 일측이 제소하지 않은 쟁점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 정부는 패널 판정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며, 상소기구 마비 상황을 고려하여 일측과 합리적인 상소절차에 대해 협의할 계획

□ **세계무역기구**(WTO)는 11.30.(월) 16:00(제네바시간),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우리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일본·인도·스페인산 SSB의 3차 종료 재심에 관한 반덤핑관세부과 조치로 일본산(산요, 다이도, 아이치社 포함) SSB에 3년('17-'20)간 15.39% 부과

□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며, 일본은 동 조치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에는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있어 **상호 간 경쟁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18.6.18)한 바 있음.

* 관세적용대상 품목중 일본산 제품의 국내 수입규모는 연간 약 46억원('19년)

□ 패널은 **일측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일측**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 일본산 SSB와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주장 등

○ 특히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국내산 SSB 간 제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인도산 SSB를 누적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일본**의 **핵심 주장**에 대해,

- **일본산-국내산 SSB 간 제품차이**에 대한 **일측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이와 연계된 쟁점인 **누적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 **일본산-인도산 SSB**의 **효과**(가격 등)를 **누적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 **사법경제**(judicial economy)*를 **이유**로 **판단 회피**

*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 이어서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 SSB**의 **비누적가격**이 **국내산 SSB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일측 제소장에 비포함)을 자체적으로 문제 삼아 **우리측 패소 판정**을 내림

- 그러나 **일본산-인도산 SSB의 누적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저가**인바, **양자 간 누적평가가 적법**하다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음**

□ 그 외에도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임

* 제소장에 따른 심리권한을 월권한 부분, 제소 대상 반덤핑조치가 일몰재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조사에서의 가격효과 분석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격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전제한 부분 등

○ 다만, 정부는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Division)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본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임.

□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임.

【붙 임】 1. 패널 보고서 주요 판정결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이정효 사무관(☎ 044-203-4866), 산업피해조사과 김준철 사무관(☎ 044-203-58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패널 보고서 주요 판정결과

쟁점		쟁점내용	패널 판정
실체적 쟁점	피해의 지속 혹은 재발 가능성 판단 (AD 협정 11.3조)	무역위가 일본산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 가격차이를 미고려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불합치
		무역위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을 산출한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	불합치
		무역위가 일본 및 국내 생산자 간 SSB 생산품목 차이를 미고려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합치 (보고서 7.109항)
		무역위가 기타 요인(생산비, 수요 등)의 효과를 미고려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합치
	"이용 가능한 정보" 사용 (AD 협정 6.8조)	무역위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시 일본 생산자의 실제 자료를 무시하고 세계 스테인리스 스틸 포럼(ISSF)의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불합치
절차적 쟁점	비밀정보 처리 (AD 협정 6.5조)	무역위가 비밀자료 비공개를 위한 '정당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합치 (보고서 7.210항)
		무역위가 102개 비밀정보 비공개 시 '정당한 사유'를 묵시적으로 제시한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	불합치

※ 피해의 지속 혹은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AD 협정 11.3조) 중 동 분쟁의 핵심 쟁점인 '무역위가 일본산·인도산·스페인산 SSB 효과를 누적하여 평가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소송 경제를 이유로 판정을 회피 (보고서 8.1.b.v항)